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(3단 비교)

법	시행령	시행규칙
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량 이상인 자(이하 " 에너지다소비사업자"라 한	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 (이하 "연간에너지사용량" 이라 한다)가 2천티·오·이 이상인 자를 말한다.	
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	등)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	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
(이하 "에너지진단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아파트·발전소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만타·오·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타·오·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(이하 "부분진단"이라 한다)을실시할 수 있으며,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	주택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 대주택
	을 실시한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 을 받은 것으로 본다.	

③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 위로 계산하되, 에너지진단[본조신설 2006.7.4] 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 터 기산한다.

[본조신설 2006.6.22]

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 을 관리·감독한다.

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 제22조의3(에너지진단전문기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 관의 관리·감독 등) 산업자 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" 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- 1.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 에 관한 사항
- 2.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
- 3.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 실태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 리·감독을 위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06.6.22]

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자체에 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

제11조의3(에너지진단의 면제 등)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 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 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 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 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 다

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 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 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 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
- 2.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
- 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, 신청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.

[본조신설 2006.7.4]

⑤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 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 행을 위한 지도(이하 "에너 지관리지도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⑥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제22조의4(에너지진단비용의 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 지원) ①산업자원부장관이 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에

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상·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 요되는 비용(이하 "에너지 진단비용"이라 한다)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
- 2.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천 티·오·이 미만일 것
- ②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 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.

[본조신설 2006.6.22]

⑦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진단 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5(진단기관의 지정기 제11조의4(진단기관의 지정절 준)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차 등) ①법 제24조제7항에 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[본조신설 2006.6.22]

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 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 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

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 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변경지 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 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|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 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.

- 1. 사업계획서
- 2. 보유장비명세서
- 3. 기술인력명세서(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 서를 포함한다)
-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.
- 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

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서가 헐 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⑧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6.7.4]

제11조의5(진단기관의 지정취

소 공고) 산업자원부장관은

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

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

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

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

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

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

[전문개정 2005.12.23]

제24조의2(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)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[본조신설 2006.7.4]

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행하는 경우
- 3.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4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
- 5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[본조신설 2005.12.23]

- 제25조(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<개정 1999.1.29, 200 5.12.23>) ①에너지다소비사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 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 <개정 1997.8.22, 1999.1. 29, 2002.3.25, 2003.12.30, 20 05.12.23>
 - 1.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· 제품생산량
 - 2.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·제품 생산예정량
 - 3.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 황
 - 4.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 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 획
 - 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

제12조(에너지사용량신고)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 지 제7호서식에<%생략:서 식7%> 의한다.

(이하 "에너지관리자"라 한 다)의 현황

②시·도지사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 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 <신설 2002.3.2 5>

③삭제 <2005.12.23>
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 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 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999.1.29, 2005.12.23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 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1 997.8.22>

제33조(개선명령) ①산업자 제23조(개선명령의 요건 및 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절차등) ①법 제33조제1항 결과,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 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 수 있다. <개정 1997.8.22, 1 트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6.6.22>

>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. 개선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6.30>

> 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 터 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결 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

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 정 1999.6.30, 2006.6.22>

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1999.6.30>

[전문개정 1998.2.2]

제23조의2(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) 산업자원부장관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확인하게할 수 있다.<개정1999.6.30>

[본조신설 1998.2.2]

제7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19 97.8.22, 1999.1.29, 2003.12.3 0, 2004.12.31, 2005.12.23>

- 1.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
- 2. 에너지기술의 개발·도입· 지도 및 보급
- 3. 에너지이용합리화, 신·재 생에너지의 개발·보급 및 집 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

자금의 융자 및 지원 3의2.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4.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 리지도 5. 신·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의 촉진 6.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· 연구·교육 및 홍보 7.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·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·설치·운영· 대여 및 양 도 8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9.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 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.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 업에 부대되는 사업 11.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온 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 한 사업

제88조(교육) ①산업자원부장 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 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 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 0>

②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 아야 한다. <신설 2003.12.3 0>

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, 시 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 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 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 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 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12.30, 200 5.12.23>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8.22, 1999.1.29>

제89조(보고 및 검사 등<개정 2005.12.23>) ①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제22조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.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한다.

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 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4.7.12]

제2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 업자원부장관, 특별시장·광

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 소비사업자, 효율관리기자 재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 매업자, 시험기관, 진단기관,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 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 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 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 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·사 업장·공장이나 창고에 출입 하여 장부·서류·에너지사용 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 9.1.29, 2002.3.25, 2005.12.2 3>

- ②삭제 <1997.8.22>
- ③삭제 <1997.8.22>
- ④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 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보고 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7.4>

- 1.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 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·수 입 또는 판매실적
- 2. 에너지절약전문기업(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영 업실적(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)
- 3.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
- 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 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 정 2006.7.4>
- 1.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를 위한 사항

- 3.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 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 한 사항
- 4.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관한 사항
- 4의2.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 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 에 관한 사항
- 5의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사항
- 6.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
- 7.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 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
- 8.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

9.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 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

10.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2.11.12]

제24조(에너지진단 수수료) 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 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 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 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 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 로 정하되, 직접 인건비, 직 접 경비, 제 경비 및 기술 료 등으로 구성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 로 해당진단기관에 납부하 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6.7.4]

제90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.

- 1.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받고 자 하는 자
- 2. 제58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

[전문개정 2005.12.23]

제91조 (청문)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.2 9, 2005.12.23>

1.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

- 2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 너지 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
- 3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

[전문개정 1997.8.22]

- 제9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제38조의4(권한의 위임) 산업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. <개정 1997.8.22, 1999.1. 29>
 - 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 장에 한한다)에게 재위임할
 -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공단·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.29, 2002.3.25, 2005.1 2.23>
 - 1.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 너지사용계획의 검토

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 자원부장관은 법 제92조제1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항에 따라 법 제100조제3항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 한다. <개정 2006.6.22>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 [본조신설 2003.3.25][제38조 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의2에서 이동 <2004.6.29>]

- 의 승인을 얻어 시장·군수 제39조 (업무의 위탁) ①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 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수 있다. <신설 2003.12.30>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공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06.6.22>
 -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
 - 2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 태파악
 - 3.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측정결과통보의 접

- 2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 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
- 3.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
- 4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 른 진단기관의 관리·감독 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
- 4의2. 제2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진단기관의 관리·감 독
- 5.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
- 6.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대상기기의 검사, 검사증 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 기 등의 신고의 접수
- 7. 제59조제3항 및 동조제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·해 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

수

- 4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
- 4의2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·감독
- 5.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
- 6.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
- 7.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(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)
- 8.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·사용중지·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
- 9.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 자의 선임·해임 또는 퇴직 신고의 접수
- 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·검 사기관 중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에 위탁한다. <개정 2006.6. 22>

- 1.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 사
- 2.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(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)

[전문개정 2002.9.26]

지다소비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2005.12.23>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2002.3.25, 2005.12.2 3>

- 1.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 용계획의 제출·협의 또는 변 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 외한다.
- 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100조(과태료) ①제24조제2 제4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제26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 도지사는 법 제100조의 규 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 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6.30, 2002.9.26>

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 2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 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.<개정 1999.6.30, 2002.9.26>

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표 4와 같다. 이 경우 사업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자의 사업규모, 위반정도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 다

[전문개정 2006.7.4]
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내지 제5호·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. <개정 1999.1.29, 2002.3.25, 2003.12.30, 2005.12.23>

③삭제 <2006.6.22>

1.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

- 2. 삭제 <2002.3.25>
- 3.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
- 4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
- 5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
- 6.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

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 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7.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시행하지 아 니한 자

8.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자

8의2.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- 9. 제25조제1항·제58조제7 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
- 10. 삭제 <2002.3.25>
- 11. 삭제 <2002.3.25>
- 12.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13.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
- 14.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12.23>
-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1997. 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>
-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 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1997.8.22, 1999.1.29, 2002.3.25, 2005.12.23>
-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 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 <개

정 1997.8.22, 1999.1.29, 200 2.3.25, 2005.12.23>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다. <개정 2002.3.25, 2005.1 2.23> 부칙 <제7745호,2005.12.23> 부칙 <제19540호,2006.6.22> 부칙 <제351호,2006.7.4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세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행한다. 다. ②(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 용례) 제24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 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 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.